

## 경기도

### ▶▶ 'G마크 축산물' 급식공급 개선

경기도 G마크 축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방식이 공급업체 일괄지정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도가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개선키로 했다.

지난 6월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31개 시·군을 17개 권역으로 나눠 소·돼지·닭·2차 가공육 등 축산물별로 1개 공급업체를 지정, 주거래 계약업체를 선정하 뒤 학교와 일괄계약을 맺어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공급업체를 일괄지정하는 방식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각 학교의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다 최근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자 도가 방식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도는 공급업체를 시·군별로 지정하고 물류비용을 감안해 학교별 공급물량을 시·군별로 취합한 뒤 공개입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우수 축산물 인증 및 안전 생산·관리를, 시·군 교육청은 공급업체 입찰 선정 및 가격 결정을 담당하는 등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시·군 교육청 및 학교, 생산자 등과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7년까지는 공급업체를 학교에서 선택하는 방식이었지만 업체별 G마크 생산량이 제한적인데다 시·군별로 배송차량이

중복운행돼 물류비용이 급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해 일괄지정으로 변경한 바 있다”며 “하지만 현재 이 방법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드러난 만큼 시·군 교육청 및 생산자들과 협의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안성시, 주택지 가축사육 금지 '실효성 논란'

안성시가 주택밀집지역 200m이내와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가축사육을 금지한다는 조례를 입법 예고 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주민과 축산인들 간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주택밀집지역과 취수원으로부터는 최소 500m에서 1km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200m 이내 축사 냄새가 그대로 주택으로 들어오고 특히, 먹는 물로 사용되는 상수도과 취수원 100m이내는 거리가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축산을 경영하는 축산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축사를 500m로 제한하게 되면 그에 맞는 부지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축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주민과 축산인들의 입장차로 인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입법 조례가 정상적으로 통과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성시는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2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 대지

로부터 200m이내 지역과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등에는 소와 돼지, 오리 등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예고했다.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축사의 증·개축은 제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축산인들과 간담회와 회의를 거쳤지만 정작 주민들과의 협의는 이루어 지지않아 입법 조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일죽면 등 주민들은 “조례안을 제정하려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500m 이상을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축산 밀집지역 주민과도 간담회를 통한 회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는 형식상의 조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경영과 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와 돼지, 개, 사슴, 양, 말은 5마리 이하, 닭과 오리는 10마리 이하,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이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등은 이번 제한을 두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문제가 이슈화되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논란이 되고있는 부분은 향후 다시 검토해 주거가 밀집해 있는 경우 거리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는 그것도 비도시로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번 입법된 조례안은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7월 임시회에 상정,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통과되면 도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 강원도

### ▶▶ '여름철 폭염대비 가축관리요령' 발표

강원도는 최근 30℃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시작되고 앞으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가축의 '여름철 폭염대비 가축관리요령'을 발표해 여름철 가축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도가 발표한 관리요령은 아래와 같다.

닭의 경우는 깃털에 싸여 있어 체온조절이 어려워 무더위에 약하고 폭염 시 산란율과 증체율이 떨어지고 열사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천장에 단열제를 설치한다. 자연환기보다는 환풍기 등을 이용한 강제 통풍을 한다.

또한 고압 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미세 물방울을 분무토록 하고 단위면적당 닭 수용률을 10~20% 정도 줄여 체열 발산을 최대한 증가시켜주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도는 관리지침 하달과 함께,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와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여름철 가축질병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생산자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 충청북도

### ▶▶ 음성군, 구제역·AI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혜택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음성군의회는 지난 6월 21일 음성군으로부터



올라온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을 심의, 이에 대한 2011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100% 감면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법특례제한법 및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2010년 12월 1일 기준 관내 축산농가 중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소, 돼지, 오리를 살처분했거나 축산물 폐기 같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대상 물건은 축사를 비롯한 가축시설물과 그에 딸린 토지다.

이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가 및 감면액(예상)은 소 36농가 242만7천원, 돼지 26농가 732만8천원, 오리과 닭 3농가 46만4천원이다.

## 울산광역시

### ▶▶ 내년부터 가축분뇨 100% 자원화

울산시가 내년부터 가축분뇨를 전량 자원화해 환경오염 방지 및 해양배출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올해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공급 등 5개 사업에 14억여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6월 13일 밝혔다.

시는 가축분뇨의 수분조절재인 톱밥 6천500톤(7억1천500만원), 가축의 소화기능 개선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4만8천300kg(2억4천여만원)을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지금까지 해양배출에 의존하던 돼지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삼동면 조일리, 영농법인 울주양돈조합 운영)

저장조 추가 설치에 1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2억4천500여만원(4개소)을,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 사업에 1억500만원(300대)을 투자한다.

울산시는 매년 발생하는 가축분뇨 27만5천톤(소 17만2천톤, 돼지 7만5천톤, 닭 2만8천톤) 중 26만7천500톤(97%)을 자원화 처리하고 있고, 해양배출은 7만5천톤(3%)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내 정화시설 및 기존 퇴비사 시설 보강으로 내년부터 가축분뇨를 전량 자원화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라남도

### ▶▶ 장마철 가축 매몰지 관리 강화

전남도는 장마철을 맞아 가축 매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는 7월 23일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6월 12일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생긴 가축 매몰지의 2차 오염 발생을 방지하고 장마로 인한 매몰지 유실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매몰지 담당공무원제의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점검기간 담당 매몰지에 대한 점검을 매일 하도록 하고 매몰지 비닐 피복상태, 침출수 발생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매몰지 함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미비사항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31일까지 도내 가축 매몰지

112곳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결과 매몰지 붕괴나 유실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나주 3곳에 대해서는 지난 3월말 보강공사를 완료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8개 시·군 23개 농장에서 시가 발생해 323만6천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됐으며 이로 인한 가축 매몰지는 112곳이다.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아 구제역 매몰지는 없다.

두, 닭 3만수, 오리 1만수 이상이다. 2단계 허가대상은 한육우·젖소 30두, 돼지 500두, 닭 2만수, 오리 5천수 이상이다. 3단계 허가대상은 한육우·젖소 7~29두, 돼지 60~499두, 닭 1~2만수, 오리 160~5,000수 사육농가다.

조덕준 제주도 축정과장은 “축산업허가제 도입 시행에 앞서 축산농가에 대한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며 “이번 축사시설 조사결과를 축산정책에 반영해 청정 축산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 ▶ 허가제 앞두고 축사시설 점검

제주도는 내년 축산업 허가제와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정책 시행을 앞둔 축사시설 현황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6월 28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8월말까지로, 조사대상은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육계), 오리 등 4개 축종이다. 올해 6월 축산업으로 등록된 농가 중에서 사육규모별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축종별 전업농가, 준전업 농가, 부업농가로 구분해 15~20%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방법은 축산업 등록대장에 기재된 가축사육 시설 면적과 동수, 건축물 대장상의 축사면적을 구분해 사업장소재지, 사육축종, 사육동수, 면적, 건축연도, 사육형태, 기타 부속 건축물 등을 조사한다.

축산업 허가제 대상 축종은 4개 축종(소, 돼지, 닭, 오리)으로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축산업허가제 적용시기는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적용한다.

1단계 허가대상은 한육우·젖소 50두, 돼지 1천

### ▶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요령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2일 축산 농가의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요령을 마련, 농가에 이의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도의 방역요령에는 장마, 수해, 혹서기 등 하절기 가축질병 발생 위험요인에 따른 일반 방역관리 요령과 축종별(소, 돼지, 닭) 주요 질병 예방을 위한 사양관리 요령 등이 담겨져 있다.

도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 하는 한편, 기상 특보발령 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방역요령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도는 하절기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과 함께 계절에 맞는 사양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시설, 위생, 사양관리 등에도 철저를 가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사육하는 가축이 가축전염병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관할 행정시(읍·면) 또는 동물위생시험소로 신고(신고전화 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